

# 경찰 공무원의 자격

## — 누가 경찰관이 되어야 하는가 —

〈치안연구소 연구지도위원〉 김형진

### 1. 警察官의 任務와 性格

#### 가. 警察官의 任務

우리나라 경찰법 제3조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조직의 임무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서 같은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범죄를 수사하고 진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벌법규와 그 절차법규가 필요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등 각종 단속법규와 직

무집행법, 직무응원법 등 경찰작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 진압, 수사, 치안정보수집 및 교통단속 등의 임무는 광의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경찰공무원)은

- 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 ② 法 執行者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찰의 임무는 어느나라이든 거의 공통적일 것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경찰기능을 어떤 조직에 부여할 것인가, 어떤 임무를 더 부여하는가는 그 나라의 立法 政策의 문제이다.

\* 경찰 기능을 군대조직에 부여하는 나라(필리핀, 태국 등)

## 나. 國家存安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 책무중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존속,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이다.

범죄가 난무하고 사회가 무질서하여 불안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국가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방과 함께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는 중요한 원초적인 기능이다.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도 존립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화, 문명이 발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찰관 개개인이 그 임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이 비위나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다른 국가 공무원 개개인의 범행이나 잘못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과거에 집단시위 진압현장에서 한 경찰관이 잘못 발사한 총기나 최루탄에 의해 국기가 흔들리는 위험을 많이 경험한 바 있다.

## 다. 힘들고 危險한 고달픈 업무

또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일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에게 유용한 통신, 교통수단, 컴퓨터, 기타 생활도구 등 각종 문명의 이

기는 바로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는 점점 지능화 되고 조직적이며 지역을 초월하여 광역화 되면서 범인은 또한 완전범죄를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 방법이 흉포하고 범인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지극히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강력범죄를 검거, 수사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검거 후에도 범인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에 대한 보복의 위협을 각오해야만 한다.

또한 시위, 소요, 등 집단사태에 대한 진압은 처음부터 경찰관의 위협과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하고 쉬고, 잠잘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의 원초적인 질서유지기능, 즉 경찰은 그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요 이 일은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된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능동적·효율적으로 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 라. 國民의 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

범인이나 질서 위반자라 하더라도 그는 한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한 일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비록 범죄를 범했거나 질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범위내에서 법률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검거 처벌되는 것이다.

법을 잘못 해석,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고귀한 인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해서 또다른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산다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나름대로 생각과 목적이 있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다룬다는 것은 어렵고, 또 할 수도 없다. 다만 질서를 위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뿐이다.

한 번의 잘못이나 과오를 뉘우치고 성현이 된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도 많다.

또한 경찰이 혐의자로부터 범인을 가려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신중해야 하며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 마. 警察도 하나의 職業

경찰이 국가의 원초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지만 그 일은 결국 경찰관이라는 자연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 개 개인이 살아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경찰관도 그 가족과 함께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하나의 보통사람이다. 경찰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경찰의 기능은 원활하게 발휘될 수 없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수의 경찰관의 대부분은 이 “보통사람”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사람)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은 단순한 보통사람이 갖는 그 이상의 “義” “勇” “智” “德”을 경찰관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이 다른 공직자, 다른 직업인과 다르다는 것을 경찰관은 스스로 깨닫고 또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 2. 警察公務員法上 警察官의 任用資格

누가 경찰관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임용하며,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어떻게 복무하고, 어떻게 그 신분을 보장하는가를 규정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이다.

경찰관이 국가공무원인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만 경찰의 책임과 직무의 특수

성에 비추어 채용자격, 조건을 일반 국가공무원법으로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63.4.17)된지 6년이 지난 뒤인 1969. 1. 7. 특별법으로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 가. 警察官의 任用資格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 외국어 능통자, 경찰장학금 지급자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경찰관의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다만 임용자격을 ‘신체가 건전한 자’, ‘사상이 건전한 자’ 그리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지극히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임용의 결격사유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도 “품행”에 관한 규정이지 신체의 건강과 사상의 건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과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연령, 학력과 신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나. 警察 公務員의 資格 및 缺格事由의 特殊性

#### ① 국적 소유자

국가 공무원법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대

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경찰이 법을 직접 집행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보다 국가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임용연령의 특칙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경찰 공무원의 공개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국가 공무원법의 연령보다 다소 고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정 이상은 25세 이상이고 순경은 21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5급이 20세 이상이고, 9급이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경정은 사무관보다 5년, 순경은 서기보 보다 3년이 더 높은 연령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특별채용연령도 같은 정도의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보다 사회적 경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③ 신체적 조건의 특수성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그 합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체력 검사와 그 평가기준도 규정하여 경찰이 힘들고 고된 업무이고 또한 그 것

을 수행하는 데에는 건강이상의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본다

신장은 167cm 이상, 체중은 57kg 이상, 흉위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며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외형조건을 중요시하고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및 운동신경등 신체 기능장애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체력 검정과 그 평가 기준을 정하여 힘과 순발력 그리고 기동력 있는 자를 우선으로 평가하므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 채용 규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자격조건이다.

#### ④ 고졸이상의 학력

일반직 공무원 채용자격에는 학력제한 규정이 없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0조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서 이러한 학력제한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될 문제이지만 경찰은 다른 국가 기능보다 기강과 명령체계가 필요하고 조직도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통해서 갖게 되는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력 제한 규정

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학력제한 규정은 당초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된 조항으로서 단순한 고등학교의 지적수준을 요구하는 의미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⑤ 결격사유의 특수성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경찰관 임용결격사유로 6개 조항을 두고 있다.

1.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와 비교한다면

첫째, 2항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와 3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국가 공무원 법이나 경찰공무원법상 공통된 결격사유이고

둘째, 4항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5항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6항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나 면제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만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경찰공무원법은 선고된 또는 선고 유예된 형벌의 종류중 자격정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형으로 비교적 중형 선고자만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종료 면제, 유예기간 만료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는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징계처분자의 경우도 경찰공무원법은 일단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기간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결격사유가 되는데 반해, 국가공무원법은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경과 후에는 결격사유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보다 완화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이다.

벌을 받은 사람이 법을 집행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일반 국가공무원보다 더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셋째,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경찰공무원법에만 결격사유로 명문화된 규정이다.

### 3. 警察官으로 在職하기 위한 資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 법령에서는 경찰관의 임용자격 및 그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은 임용자격을 신체건전, 사상 건전 그리고 품행 방정한 자라고 하여 극히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신체가 건전한 자'에 대한 조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신체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상이 건전한 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세부 조항이 없다.

여기서 '사상'이라 함은 이데올로기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품행이 사람의 인간됨(인격)의 외형이라면 사상은 인간 됨의 내면적 실체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것을 구체적으로 문자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법상 임용자격만을 구비하고 경찰관이 되었다면 그 경찰관은 과연 어렵고 힘든 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이란 직업을 일단 선택한 이상 한 인간으로서 성공해야 한다.